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4-27호

「상주시 충의공 정기룡 정신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14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충의공 정기룡 정신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충의공 정기룡에 대한 상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,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의공 정신을 계승하고 그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함.

2. 주요내용

- 목적 (안 제1조)
- 정의 (안 제2조)
- 책무 (안 제3조)
- 선양사업 등의 지원(안 제4조)
- 포상 (안 제5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18일까지 상주시의회의회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·개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kjh4400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> → 의회소식 → 공지사항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상주시 충의공 정기룡 정신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견	비 고